

<h1>보도자료</h1> <p>2022. 2. 25.</p>		<h2>양형위원회</h2>
	<p>문의</p>	<p>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31-920-5601)</p>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7차 공청회 개최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대상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2. 25.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7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함

①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2. 2. 25. 14:00 ~ 17: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회의실
- 방청 : 온라인 생중계(대법원 유튜브 채널)
- 사회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발표 : 최승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 지정토론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김예원(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 김혜래(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 김병익(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 최호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개요

- 2022. 1. 24. 배포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보도자료(첨부 자료) 참조
-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수정안)과 그 설명자료는 공청회 자료집 참조[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공개토론회' 탭 - '공청회'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 지정토론문 원문은 공청회 자료집 참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공개토론회' 탭 - '공청회'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양형기준 전반]

-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대상범죄를 추가하고 권고형량을 상향한 점, 감경인자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대체적이었음.** 다만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적인 아동학대범죄군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김예원 변호사, 김혜래 과장)**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기본범죄들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산재해 있고, 그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서로 달라 그 전부를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동학대범죄가 포함된 현행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대상의 추가,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답변(이재신 전문위원)**이 있었음

[감경인자: 처벌불원]

- ☞ **'처벌불원'의 적용에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김병익 관장)에 대하여, **향후 양형심리 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의미에 대하여 신중한 심리가 요청되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본인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양형심리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보충의견(홍진영 교**

수)이 있었음

- ☞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불원을 감경인자에서 배제하자는 의견(김혜래 과장)**에 대하여, ① 아동학대범죄가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인 점, ② 유사형벌체계를 갖춘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도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점, ③ 양형위원회에서 처벌불원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정비하고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의 경우를 ‘처벌불원’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답변(최재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감경인자: 소극 가담]

- ☞ 피해사실을 인지한 비가해보호자가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할 경우 아동에게는 행위자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되므로 **‘소극 가담’을 감경인자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고, 방조도 공범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병익 관장)**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① 다수관여자에 의한 범죄에 있어서 현행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는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한정되고,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②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조력이 방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어서 전형적인 양형인자를 추출해서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만 방조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다는 **답변(홍진영 교수)**이 있었음

[가중인자]

- ☞ 가중인자로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견(김혜래 과장)**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현재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보호자이므로 이를 별도 양형인자로 규정할 실익이 그다지 높지 않고, 비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도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자에 의한 범행에 비하여 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일률적인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는 답변(최재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 ☞ 그밖에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가중인자에서 **취학 여부를 삭제하자는 의견**, ‘아동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의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정의규정에서 ‘**피해 야기**’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자는 의견**(이상 김예원 변호사) 등이 있었음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의견

[기본원칙]

- ☞ **노역장유치 및 법인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도 설정원칙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이 있었고,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형종선택원칙]

- ☞ 설정되는 양형기준이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형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병과형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지**, 형종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한계 사례**’에서 이를 **설정하는 기본적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최호진 교수)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의 ‘원칙’을 정하는 현 단계에서, 병과형 적용 여부를 명시하거나 ‘한계사례’에서의 기본적 방식 설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백광균 전문위원)이 있었음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 권고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상태를 행위자/기타인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최호진 교수)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는 피고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점, 일수 벌금제의 경우 형벌의 실효성 등에 있어서 부작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백광균 전문위원)이 있었음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 ☞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의 검토시기를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이 있었음
- ☞ 이에 대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논의가 이제 시작된 점, 실무상 벌금형 집행유예 활용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 정립은 향후 운용 상황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하면 충분하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방청인 의견

[처벌불원]

- 아동학대범죄에서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설명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종래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아동이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될 수 있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탁한 경우라도 피해아동이나 피해자 측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는 답변(이재신 전문위원)이 있었음

[범죄 후 구호 후송]

-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후 의식을 잃자 피고인이 자발적인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결국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신고하거나 병원 후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양형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식적인 후송에 불과했는지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구호하기 위한 후송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하고, 형식적인 신고·후송행위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여서는 안된다**는 답변(최재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5] 향후 일정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단 회의를 거쳐 2022. 3. 28. 제11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 기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최종 의결할 예정